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I. 이용계약

1. 계약목적

사랑마을과 이용자 및 법적 보호자는 원만한 운영과 서비스 제공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나. 갱신 시에는 재인정 유효기간으로 정하며 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법적 보호자는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자동 연장된다.

다.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재계약

사랑마을과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의 수납방법은 사랑마을에서 결정하되 이용자 및 법적 보호자와 합의 하에 결정 또는 변경한다.

가. 인정서 갱신시 재계약

나. 비급여(식비 등) 변경시 변경계약

4. 계약의 해제

가.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1) 이용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의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II.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40,650	37,630	34,740	33,160	31,580	31,58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54,490	50,470	46,590	45,000	43,400	43,40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0시간 이상~6시간 미만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12시간 이상	80,060	74,170	68,520	66,930	65,350	54,780

1. 사랑마음은 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15%, 공단으로부터 85%를 청구한다.
2. 기초수급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의료수급이용자(감경대상자)는 각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의 6% 또는 9%를 부담한다.
3. 등급 외 이용자는 전액 본인 부담한다.
4. 비급여-사랑마음 지급 외 요청물품 등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추가 산정한다.
 - 가. 식재료비 - 1일 3,000원(하루 1식 산정)
 - 나. 의료비 - 외래진료나 입원, 검사 필요한 의료이용비용, 본인 개인에 한한 의약품비
 - 다. 특별간식 - 사랑마음이 제공하는 간식 이 외의 이용자의 기호식품
 - 라. 아미용비 - 자원봉사 이 외의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비용
 - 마.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이나 외부 서비스 제공
5. 월 이용료 고지 및 납부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주 보호자에게 매월 10일까지 우편 발송하여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 이용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자 및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매월 15일 전월에 발생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농협 351-0732-2957-33 사랑마을요양원)
6. 미납고지
매월 15일 전월에 대한 미납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이 발생한 주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1차 통보하며 3개월 이상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하여 미납 여부 및 미납 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2회 내용증명 고지 후에도 미납이 지속될 시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Ⅲ.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 내용대로 시설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신원인수인 권리

-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다.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라.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마.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바.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아.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자.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사본,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카.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가.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입소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마.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바.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이용자의 의무

- 가. 이용자의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나.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다.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라.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마.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 준수